

4.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중 개정령(안) 입법예고

재정경제부공고 제1998-67호, 1998. 4. 17.

주 요 골 자

- 가. 기업의 재무구조개선노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부동산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매입한 회사채·기업어음을 상환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함.
- 나. 금융기관부채상환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되 부채비율이 증가할 때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 바,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시에는 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- 다. 국민주택을 취득한 자가 5년이상 보유·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미분양 국민주택의 범위를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1998년 2월 28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것으로 정함.
- 라. 수익의 귀속시기 특례를 인정받는 조합의 범위에 증권투자신탁의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을 추가함

개정이유

국민주택의 분양촉진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(1998. 4.

10. 법률 제5,534호)됨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미분양 국민주택의 범위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이 되는 금융기관부채의 범위를 확대하며, 기타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주택회보